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1.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9. 1. 21.
-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1.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국가보훈개별법령에 의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
- 2) 구청장의 책무와 마포구민의 책무 추가 신설(안 제4조)
- 3)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4)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7조)
- 5)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
- 6) 위문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최종의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규정과 지원내용을 통합 재정비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지원대상)의 적용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서 7개 국가보훈 개별법령 <표 1>에서 적용을 받는 사람과 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2019.1.1. 기준으로 중복자를 포함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총회원은 4,935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2>

<표 1>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표 2〉 마포구 국가보훈대상 단체별 회원 현황

(단위: 명, 2019.1월 기준)											
합계	상이 군경회	전몰 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 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 전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광복회	518/419 유공자	기타 (공상공 무원 등)
4,935	626	420	346	761	248	1,194	709	19	62	30/10	510

※ 상기 인원은 중복 인원임 [예, 월남전에 참전(참전유공자) 무공을 세우고(무공수훈자) 전쟁으로 상해자(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고엽제전우회)] 등, 2018.9월 현재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4,044명

- 또한, 동 개정안 제6조(예산지원)의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을 보훈단체는 **운영비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사망위로금)에서는 사망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있어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에서 사망일 현재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등록 전출·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더욱 노력하고자 정하였음.
- 아울러, 동 개정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아래 〈표 3〉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는 기시행하고 마포구를 포함한 8개 구는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다만, 중복 지급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정하였음 〈표 4〉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구분	시 행	미 시 행
자치구	-2018년 이전 : 8개구 -2018년 : 9개구	-2019년 시행예정 : 8개구
수당액	-1만원 : 7개구(양천, 금천, 중랑, 용산, 동대문, 서대문, 송파) -2만원 : 4개구(종로, 성북, 동작, 영등포) -3만원 : 3개구(성동, 구로, 강동) -5만원 : 3개구(중, 서초, 강남)	-1만원 : 3개구(노원, 은평, 강서) -2만원 : 4개구(광진, 강북, 도봉, 관악) ※마포구 : 2만원 예정
인상계획 (2019)	-4개구(용산, 동대문, 서대문, 송파) : 1만원→2만원 인상 -2개구(서초, 강남) : 5만원→7만원 인상	-1개구(강서) : 1만원→2만원 인상

〈표 4〉 서울특별시 수당 수급자 현황(마포구)

(단위: 명, 2018.9월 기준)

합계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1,476	1,360	96	20

- 이어서, 동 개정안 제9조(위문금 지급·신청)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와의 수당 수급액의 차등 〈표 5〉을 줄이고자 위문금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로 국한하여 정하였음.

〈표 5〉 2019년도 보훈급여금·수당 월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국가보훈처 자료)

구분	지급대상자	월지급액(최소/최대)	비고
독립유공자	본인(보상금+특별예우금)	2,707 / 8,039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수당 별도
	유족(보상금)	708 / 2,531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보상금+수당)	453 / 5,219	“
	재일학도의용군인(보상금+수당)	1,282 / 1,556	
	4·19혁명공로자(수당)	311	
	군경유족(보상금+수당)	465 / 1,787	
무공영예수당	무공훈장(인헌~태극, 5단계)	360 / 380	참전명예 중복불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300	서울시 10만원 별도
고엽제후유의증수당	후유의증	452 / 934	장애(경도~고도)
	후유증2세환자	1,038 / 1,664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보상금+수당)	317 / 3,586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수당 별도
	유족(보상금)	496 / 1,059	
5·18민주유공	5·18민주유공자	-	서울시 5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
특수임무유공	특수임무유공자	-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본인)	1,127 / 3,268	마포구 국가보훈대 상자 20만원 별도
	독립유공자(유족)	1,127 / 2,261	
	상이군경	1,127 / 1,704	
	재일학도의용군	1,127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 근거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대상을 통합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있어 2019년 부터 서울시 25개 구가 전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인별로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있어, 향후 마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양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당의 적정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 없음